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60.02.01			
	자택주소	(00000) 전북 완주군 00면 00리 00-00		
	자택전화	063-000-0000	이동전화	010-0000-0000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주 안보공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0
	대표자	홍길동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0
	담당자명	김아무개	담당자 전화번호	010-0000-0000
			담당자 이메일 주소	abcde@kosha.or.kr
	근로자수	20 명	회사전화번호	063-000-0000
	업종	제조업	FAX 번호	063-000-0000
	소재지	(5501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고용노동부청사 4층)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5501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고용노동부청사 4층)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11,120 천원	보조신청금액	7,784 천원
	자체 부담금액	3,336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행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재지	(-) (전화번호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또는 제28조의10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홍길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 담당자 정보 필수입력 바랍니다.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제조·서비스업(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포함)

[단위: 대(식), 천원]

투자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11,120	7,784	7,784		3,336	
지게차 충돌예방장치	A-1	1대	1,000	700	700		300	2022-04-01
	A산업	1,000						
지게차 충돌예방장치	BB-2	3대	120	84	84		36	2022-04-01
	A산업	40						
고소작업대	CCC-3	1대	10,000	7,000	7,000		3,000	2022-03-15
	B리프트	10,000						

- 주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술지원(점검.감독)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2) 투자설비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을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귀하

[illegible]

[예시] 견적서

제품 카탈로그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 국가 보조금 지원

지게차 설비 지원

<2021.01.16 시행 지게차 안전 장치 설치 의무>
미장착 시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시] 제품 카탈로그

※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서류 택 1

[illegible]

② 판매업체 발생 해당상품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이상) 및 해당상품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 조 원 가 계 산 서				
■ 품 명 :		■ 생산량 :		1
■ 규 격 :		■ 단 위 :		EA
		구	액	구
		분		성
				비
				고
① 재료비	직접재료비		774,459	
	간접재료비		23,233	
	작업보수상환(△)		-	
	스		797,692	27.6%
	회전노		1,003,549	
	간접노		150,532	
	스		1,154,081	39.9%
	전역		35,131	
	수도공		390	
	운반		-	
	값가상		-	
	수리수		18,346	
	특정		-	
	기		-	
	연구		-	
	시험		-	
	지		-	
	보		-	
	회		17,195	
② 관리비	배리		38,315	
	보		-	
	외		-	
	상		-	
	스		-	
	매		-	
	세		54,259	
	회		-	
	도		-	
	지		-	
	타		-	
	스		163,636	5.7%
	회		2,115,409	73.1%
	회		148,078	5.1%
	회		366,448	12.7%
	회		2,629,935	90.9%
	회		262,993	9.1%
	회		-	1.0%
총		액	2,892,928	100.0%

④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해당상품 제조원가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일 15일 이내)



발급번호 : 51-20210111-3295075

1/1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보험구분	☒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전라북도			

(고용/산재) 정보	※ 고용/산재 정보는 고용/산재만 신청한 경우에 표시됩니다.		
건설공사명			
보험성립일		보험소멸일	
사업개시번호 및 공사명			
용도	조달청제출용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하고는 채납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01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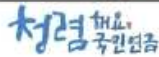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 가입(납부)이력이 있는 보험만 표출됩니다.
 ※ 법인사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장등록번호의 모든 사업장에 가입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를 완납 시 발급됩니다.
 (고용/산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업장관리번호의 완납여부만 해당합니다.)
 ※ 이 증명서는 건설업 및 별목업 등 고용, 산재보험료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료 완납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증명서발급사실확인' 메뉴를 통해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로 발급받은 경우는 이력 조회만 가능합니다.



인쇄용지(2급)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2021	발급일시	2021-01-29 13:48	사업장 관리번호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1 / 1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자격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							
2							
3							
이 하 여 백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확인용]으로 신청·발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용]은 4대 사회보험의 업무목적만을 위해서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 기관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타 기관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단 지사 창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 받아 제공하는 것입니다.(문의전화: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산재·고용보험 1588-0075) -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가입내역은 해당 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근로자 고용일을 뜻하며, 건설업 및 별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취득일(고용일)'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이 사		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 이 사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시지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시지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이며, 발급사실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발급사실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렴한 정보연계서비스, 4대 사회보험이 함께 합니다."

[예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이동크레인, 건설기계 등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해당 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설기계 ☐ 등록증 ☐ 검사증				
발급번호		최초등록일 :		
등록사항	건설기계의 표시			구 등록번호 :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규격	
	원동기 및 형식		차대일련번호	
	사용본거지 (상호 및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표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사유 : 변경				
순창군 				

1. 주 요 제 원			
형식승인번호 :			
길이	3750 mm	너비	1197 mm
높이	2183 mm	총 중량	4450 kg
주행방식	지주식 (타이어식)	정격출력	63/2200 PS/RPM
기동수	4	기동	연료종류
2. 저 당 권 등 록 사 실			
설정			
*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작 업 장 치	
※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	최대일련번호 3230 mm 쇄스랑 치수(길이X두께) 1050*45*125 mm 기준하중의 중심 500 mm 마스트(봉) 경사각(전경각) 6 도 마스트(봉) 경사각(후경각) 10 도 최대하중 3000 kg 마스트하강사높이 2165 mm 스프레다 치수(폭X높이) mm 볼 단 수 단
최고속도(90km/h) 제한장치	설치 ()
대 형 건 설 기 계 표 지	설치 ()
※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하여야 합니다.	

산재예방시설자금 투자계획 확인사진 (예시)

※ 지게차의 경우, 번호판 사진 포함하여 2장 이상 첨부 / 그 외 품목은 설치예정 현장 사진 첨부 바람



< 전면 >



< 후면 >



< 좌측면 >



< 우측면 >

예시1. 지게차 사진(번호판 사진 포함)



예시2. 고소작업대 설치예정 장소 사진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급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보조금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용자금·보조금**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용자금·보조금** 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준영구) 내 보관하고 보유 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00월 00일

○ 사업장명 : **(주)안보공**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홍길동**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기업명 (주)안보공

대표자 홍길동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16조제2항 및 제39조 관련)

■ 제조·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세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 **사후 기술지도**(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서명

홍길동

-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예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고정 구조물,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5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 서명

홍길동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5년**)
-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사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홍길동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60.02.01
	성명	홍길동 (서명)

(뒷면)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클린사업 추진 주의사항】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투자계획확인 서약서

① 사업장명	(주)안보공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⑤ 업종	☐ 건설업 본사(건설업 등록증 보유여부: 예 ☐ / 아니오 ☐ ☐ 제조·서비스 등 그 외 업종		
③ 유선통화 공단 담당자		④ 통화 일자	20 년 월 일

준 수 · 유 의 사 항 ⑥

-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행위(페이백 등) 시 보조금 전액환수 및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동의 ☒ / 미동의 ☐
- 중고품 구입 또는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매각·분실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동의 ☒ / 미동의 ☐
- 사업주는 우수한 품질 및 AS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적정업체 및 모델을 선정하여야 함 동의 ☒ / 미동의 ☐

◆ 상기 사항에 대해 미동의 시 보조금 지원 불가함

※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및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참조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자금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준수·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⑦ 2022년 00 월 00일
 사업주 홍길동 (서명)
 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